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
번호 **134**

제출년월일 : 2015. 10. 14.
제 출 자 : 서대문구청장

- 대한 의견이 있어 반영함
- 4) 규제심사 : 규제신설·폐지 등 없음
 - 5) 성별영향평가 : 원안 동의
 - 6) 부패영향평가 : 원안 동의

1. 개정이유

가재울 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완료를 앞두고 남가좌제1동 청사가 2015. 10. 5.에 이전함에 따라 주민센터의 위치를 변경하고, 정비구역 전체를 남가좌제1동 행정구역에 편입시켜 남가좌제1동과 남가좌제2동의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남가좌제1동 주민센터의 위치 변경 (안 별표 2)
- 나. 남가좌제1동, 남가좌제2동의 관할구역 변경 (안 별표 2)

동명칭	주민센터의 위치	관할구역
남가좌제1동	모래내로 15길 37	남가좌동 중 모래내로 15길 서측 및 가재울로 45 남측 지역
남가좌제2동	증가로 10길 28	남가좌동 중 모래내로 15길 동측 지역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
 - 2) 「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」 제9조의2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기 타
 - 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 - 2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: 별첨
 - 3) 입법예고(2015. 9.23. ~ 2015.10.13.)결과 관할구역의 방향기준 등에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등의 명칭·주민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 중 남가좌제1동의 주민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과 남가좌제2동의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동명칭	주민센터의 위치	관할구역
남가좌제1동	모래내로15길 37	남가좌동 중 모래내로15길 서측 및 가재울로 45 남측 지역
남가좌제2동	증가로10길 28	남가좌동 중 모래내로15길 동측 지역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[별표 2] 등의 명칭·주민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	[별표 2] 등의 명칭·주민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h style="width: 20%;">동명칭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주민센터의 위치</th> <th style="width: 60%;">관할구역</th> </tr> <tr> <td colspan="3">충현동 ~ 홍은제2동(생 략)</td> </tr> <tr> <td>남가좌제1동</td> <td>수색로2길 48</td> <td>남가좌동 중 금모래길 서측 지역</td> </tr> <tr> <td>남가좌제2동</td> <td>증가로10길 28</td> <td>남가좌동 중 금모래길 동측 지역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3">북가좌제1동~북가좌제2동(생 략)</td> </tr> </table>	동명칭	주민센터의 위치	관할구역	충현동 ~ 홍은제2동(생 략)			남가좌제1동	수색로2길 48	남가좌동 중 금모래길 서측 지역	남가좌제2동	증가로10길 28	남가좌동 중 금모래길 동측 지역	북가좌제1동~북가좌제2동(생 략)		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h style="width: 20%;">동명칭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주민센터의 위치</th> <th style="width: 60%;">관할구역</th> </tr> <tr> <td colspan="3">충현동 ~ 홍은제2동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tr> <td>남가좌제1동</td> <td>모래내로15길 37</td> <td>남가좌동 중 모래내로15길 서측 및 가재울로 45 남측 지역</td> </tr> <tr> <td>남가좌제2동</td> <td>증가로10길 28</td> <td>남가좌동 중 모래내로15길 동측 지역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3">북가좌제1동~북가좌제2동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/table>	동명칭	주민센터의 위치	관할구역	충현동 ~ 홍은제2동(현행과 같음)			남가좌제1동	모래내로15길 37	남가좌동 중 모래내로15길 서측 및 가재울로 45 남측 지역	남가좌제2동	증가로10길 28	남가좌동 중 모래내로15길 동측 지역	북가좌제1동~북가좌제2동(현행과 같음)		
동명칭	주민센터의 위치	관할구역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충현동 ~ 홍은제2동(생 략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남가좌제1동	수색로2길 48	남가좌동 중 금모래길 서측 지역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남가좌제2동	증가로10길 28	남가좌동 중 금모래길 동측 지역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북가좌제1동~북가좌제2동(생 략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동명칭	주민센터의 위치	관할구역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충현동 ~ 홍은제2동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남가좌제1동	모래내로15길 37	남가좌동 중 모래내로15길 서측 및 가재울로 45 남측 지역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남가좌제2동	증가로10길 28	남가좌동 중 모래내로15길 동측 지역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북가좌제1동~북가좌제2동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관계 법령

**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**

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 발생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
 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 : 동 경계를 변경하는 조례로 비용발생 하지 않음.

4. 작성자 : 행정지원과 행정7급 유미현(330-1054)

- **지방자치법** [시행 2015.6.4.] [법률 제12738호, 2014.6.3., 타법개정]
제4조의2(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 등의 명칭과 구역)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,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, 그 결과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② ~ ⑤ (생략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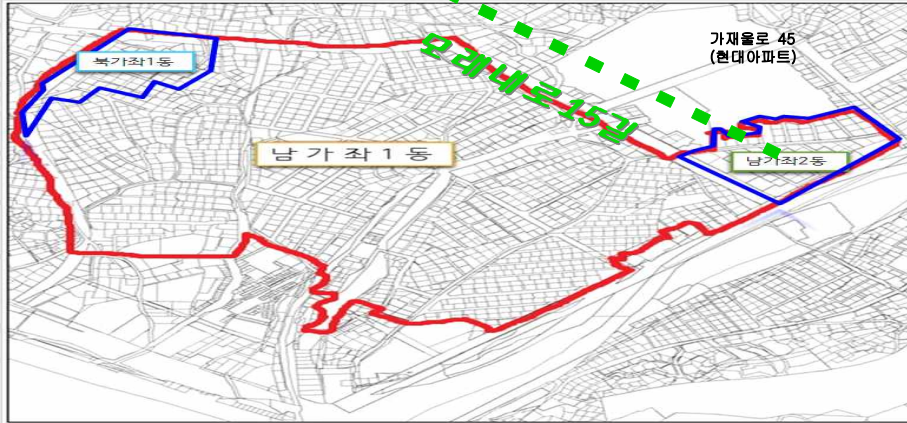
□ **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**

[시행 2014.11.19.] [행정자치부령 제1호, 2014.11.19., 타법개정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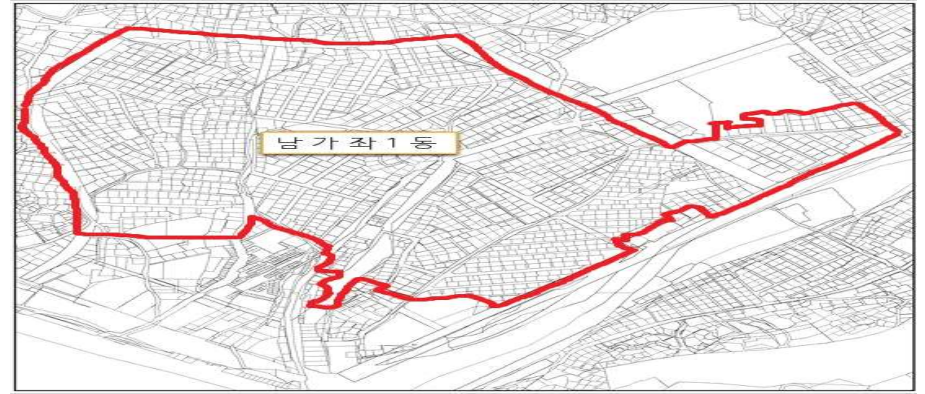
- 제9조의2(토지의 개발·정비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) 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토지의 개발·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1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·면·동에 걸쳐게 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의 완료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법 제4조의2제1항단서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1.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조서
 2.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
 3. 행정구역 변경도

▣ 행정구역 변경대상 현황도

변경전



변경후



— : 동 경계 — : 사업구간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[심사보고서]

2015년 10월 23일
행정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5년 10월 14일, 서대문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15년 10월 15일

다. 상정일자 : 2015년 10월 19일 (의안번호 : 134)

[제219회 서대문구의회(임시회)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]

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행정지원과 오남희 과장)

가재울뉴타운 4구역 정비사업부지 내 아파트가 10월에 완공됨에 따라 사업부지 내 남가좌2동 일부를 남가좌1동으로 편입하여 동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의 편의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재울뉴타운 4구역 부지 내 남가좌2동 76번지 외 105필지를 남가좌1동에 편입
- [별표2] 동의 명칭·주민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을 개정함

동명칭	주민센터의 위치	관할구역
남가좌제1동	모래내15길 37	남가좌동 중 모래내로15길 서측 및 가재울로 45 남측 지역
남가좌제2동	증가로10길 28	남가좌동 중 모래내로15길 동측 지역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

2) 「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」 제7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

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2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: 별첨

3) 입법예고(2015. 9. 23. ~ 2015. 10. 13.)결과 관할구역의 방향기준 등에 대한 의견이 있어 반영함

4) 규제심사 : 규제신설·폐지 등 없음

5) 성별영향평가 : 원안 동의

6) 부패영향평가 : 원안 동의

5. 검토의견(전문위원 이일우)

가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개정조례안은 2015년 10월 14일 서대문구청장에 의해 의안번호 제134호로 제출되어 2015년 10월 15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음.
- 동 개정조례안은 가재울뉴타운 4구역 정비사업부지 내 아파트가 2015년 10월 완공되므로 사업부지 내 남가좌2동 일부를 남가좌1동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 검토의견

- 먼저 동 개정조례안은 가재울뉴타운 4구역 부지 내 남가좌2동 76번지 외 105필지를 남가좌1동에 편입하면서 별표2의 동(洞)명칭·주민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을 개정하고 있음.

현행 조례는 남가좌 제1동 주민센터의 위치를 수색로2길 48로, 관할구역을 남가좌동 중 금모래길 서측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, 동 개정조례안은 남가좌 제1동 주민센터의 위치를 모래내15길 37로, 관할구역을 남가좌동 중 모래내로15길 서측 및 가재울로 45 남측 지역으로 변경하고 있음.

이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부지 내 아파트가 2015년 10월말 준공되고

주민등록상 전입주민이 증가하는 것을 예상하여 주민편의를 위해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최근 신축된 남가좌 제1동 주민센터의 주소지와 관할구역을 단순 반영한 것으로 별도의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- 한편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(2015. 9. 23. ~ 2015. 10. 13.)결과, 관할구역을 좌측, 우측에서 방향 기준인 서측, 동측으로 수정 보완하고, 가재울 뉴타운 4구역을 시간이 경과되어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주변 건물 도로명주소로 수정 보완하였다는 소관부서의 의견이 제출되었음.

※ 현행 조례·개정조례안·수정조례안 비교

현 행		
[별표2] 동의 명칭·주민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		
동명칭	주민센터의 위치	관할구역
남가좌제1동	수색로2길 48	남가좌동 중 금모래길 서측 지역
남가좌제2동	증가로10길 28	남가좌동 중 금모래길 동측 지역
개 정 안		
[별표2] 동의 명칭·주민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		
동명칭	주민센터의 위치	관할구역
남가좌제1동	모래내로15길 37	남가좌동 중 모래내로15길 좌측 및 가재울뉴타운 4구역 지역
남가좌제2동	증가로10길 28	남가좌동 중 모래내로15길 우측 지역
수 정 안		
[별표2] 동의 명칭·주민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		
동명칭	주민센터의 위치	관할구역
남가좌제1동	모래내로15길 37	남가좌동 중 모래내로15길 서측 및 가재울로 45 남측 지역
남가좌제2동	증가로10길 28	남가좌동 중 모래내로15길 동측 지역

6. 질의 및 답변 : 회의록 참조.

7. 토 론 요 지 : 없음.

8. 심 사 결 과 : 재석의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.